

공 보

제682호 2019. 1. 30.(수)

선 결	기관의 장

조 례

거창군 조례 제2485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3
거창군 조례 제2486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14
거창군 조례 제2487호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8
거창군 조례 제2488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3
거창군 조례 제2489호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거창군 조례 제2490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규 칙

거창군 규칙 제1254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4
---------------	----------------------------------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19-9호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48
거창군 고시 제2019-10호	거창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 결정(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49

거창군 고시 제2019-13호 도로명주소 고시 51

거창군 고시 제2019-14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52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19-118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4

거창군 공고 제2019-128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71

거창군 공고 제2019-132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노현리(소로2-2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8

거창군 공고 제2019-133호 공인 등록 공고 80

거창군 공고 제2019-135호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1

거창군 공고 제2019-136호 공시송달 공고 87

거창군 공고 제2019-13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88

거창군 공고 제2019-139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90

거창군 공고 제2019-150호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재공고 92

거창군 공고 제2019-151호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 재공고 98

회 람									
--------	--	--	--	--	--	--	--	--	--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
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85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
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40조제3항”을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를 “제30조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
라”를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
2. 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
3. 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2. 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1.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
2.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④ 장학생 인원, 장학금 금액,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알선 및”을 “알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 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군·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조 제목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을 “(지원 취소·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금 등의”를 “보조금”으로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휴·폐업”을 “휴업·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4호·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자 전입정착금 적용례)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전입하여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p> <p><u>제11조(공유재산 지원)</u> 유치기업이 공유재산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u>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u>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40조제3항</u>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u>제30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은 50년까지, 그 밖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u> ③~④ (생략)</p> <p><u>제14조(이자 지원)</u>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u>경우에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 1.~3. (생략) ② (생략)</p>	<p>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p> <p><u><삭 제></u></p> <p><u>제12조(산업시설용지 지원)</u>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u>제40조제4항</u>에 따라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군이 조성한 산업시설용지 안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군이 토지를 기업에 대부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u>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u> ③~④ (현행과 같음)</p> <p><u>제14조(이자 지원)</u>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또는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납부한 <u>경우에는 5년간 대부료 또는 매각대금의 연 100분의 6 이하의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u> 1.~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우선구매 및 판로지원) ① 군수는 <u>군의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생략)</p>	<p>제16조(우선구매와 판로지원) ① 군수는 <u>군의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u>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기본부스(조립, 부스 2개)를 기준으로 하며, 부스임차비의 100분의 8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내로 한다.</u> 2. <u>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에 대하여는 지원한도액을 3백만원 내로 한다.</u> ③ (생략)</p>	<p>제19조(국내 전시회참가 지원) ① 군수는 <u>관내 기업이 다른 기관, 단체, 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고 전액 해당 기업체 부담으로 국내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u>기본부스는 조립 부스 2개 기준</u> 2. <u>부스임차비 100분의 80 지원,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u> 3. <u>거창군 최고경영인상을 수상한 기업 지원한도액은 3백만원 이내</u>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u>군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와 산업평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학생을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장학생의 자격 및 인원,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1. <u>장학생은 추천마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다만, 고등학생은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u></p>	<p>제23조(근로자 자녀 장학금 지급) ① <u>군수는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의 근로자 자녀 중 근면하고 성실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 근로자 자녀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u> 1. <u>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u> 2. <u>추천마감일 기준 2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u></p>

현 행	개 정 안
<p>2. 장학생 인원과 장학금의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p> <p>3. 학교, 단체, 기업 또는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한다.</p> <p>③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의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p> <p>④ 장학생은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p> <p>1. 영세하여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기업체</p> <p>2. 근로자의 보수 및 재산정도</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u>알선 및</u>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거창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p> <p>1. 근로자 자녀 학비지원이 곤란한 영세한 기업체</p> <p>2. 근로자 보수와 재산 정도</p> <p>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 단체, 기업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그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p> <p>④ 장학생 인원, 장학금 금액, 장학생 신청절차는 군수가 정한다.</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u>알선, 진입도로</u>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25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군수는 각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제24조의2(근로자 전입정착금) ① 군수는 관내 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 세대원 ③ 전입정착금의 지원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입정착금을 지원받은 근로자나 그 가족 세대원이 2년간 전출한 후 다시 전입할 경우 2. 군에 주소를 둔 근로자가 관외 기업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2년간 다른 시·군·구에 전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전입정착금의 지원조건,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5조(지원 취소·반환)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은 기업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이행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p> <p>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한 경우</p> <p>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p> <p>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p> <p>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③ <u>군수는 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u></p> <p><u>제26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u></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p> <p>2. 공장시설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폐업한 경우</p> <p>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p> <p>4. 공장시설을 준공한 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은 경우</p> <p>5.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p> <p><u><삭 제></u></p> <p><u><삭 제></u></p>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에 따른 비용발생

나. 관련조문

- 1) 제24조제3항 :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마련
- 2) 제24조의2 :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 신설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출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1,000,000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	50,000	50,000	50,000	50,000	200,000
	소계	200,000	250,000	250,000	250,000	250,000	1,200,000

3. 관련 의견

관내 기업체 근로자의 전입활성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 마련으로 인구 증가와 기업의 고용안정화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55\text{명} \times \text{월}30\text{만원} \times 12\text{개월} \approx 200,000\text{천원}$

2.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100\text{명} \times 50\text{만원/인당} = 50,000\text{천원}$

작성자 : 미래전략과장 임 영 수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6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전입 정착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근거 신설(안 제24조제3항)
- 나. 근로자 전입정착금 신설(안 제24조의2)
- 다. 법령 개정사항, 조직개편사항 등 반영(안 제12조, 제14조, 제16조)
- 라. 법령 위임 없이 주민제한 사항 등 법령입안기준에 맞게 정비(안 제11조, 제25조제3항, 제2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9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법리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1. 16.~12.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86호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 제7조, 제9조 중 “2018년 12월 31일”을 각각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③ (생략)</p>	<p>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u></p> <p>2. <u>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u></p>	<p>제3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법 제38조제4항제1호 본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p>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생략)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군세 감면사항 중 서민생활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감면에 대해 감면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세 감면 기한을 3년간 연장

- 1) (현행) 2018년 12월 31일 ⇒ (개정) 2021년 12월 31일
- 2)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안 제2조제1항)
- 3)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4)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7조)
- 5)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9조)

나. 법령 위임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을 정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4. ~ 2019. 1. 2.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87호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보험료 및”을 “국민건강보험료와”로 “이바지하는 것”을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u>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u> <u>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u>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u> <u>군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p> <p>2.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u>보험료가 월 10,400원 미만인 세대</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u>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u></p> <p>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p> <p>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p>	<p>제3조(지원대상) <u>보험료 지원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u></p> <p>1.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p> <p>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p> <p>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p>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

나. 관련 조문 : 제3조 지원대상

2.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총 비용		105	110	115	140	145	615
세출	군비	105	110	115	140	145	615

- 산출기초 : 8,700천원 × 12개월 ≙ 105백만원
2022년부터 한시적 경감 제외

3. 관련 의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여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2019년도 군비 105백만원 : 저소득주민 보험료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직무대리 김근호

거창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8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2018. 7. 1. 시행)에 따라 기존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를 도입하였기에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줄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험료 지원대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안 제3조)

제2조 정의 규정에서 제3조 지원대상 규정으로 이동

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내용 반영(안 제3조)

1) 현행 : 월 10,400원 미만

2) 변경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72백만원 확보, 33백만원 추경 확보예정

다. 합 의 : 기획감사실 법리, 예산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12. 14.~2019. 1. 3.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불임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88호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거창군 의회 의원”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의원”을 “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1. 2019년도 월정수당: 월 1,798,910원

2.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2항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u>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③ (생략) ④ <u>의원이</u>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u>② 월정수당은 월 1,763,060원으로 한다.</u></p> <p>제7조(여비지급 기준) 국내·외 여비는 <u>별표1, 2의 국내·외 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 의원에</u>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①~③ (현행과 같음) ④ <u>거창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제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① 의정 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 활동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의정자료수집·연구비는 월 900,000원으로 한다. 2. 보조 활동비는 월 200,000원으로 한다. <u>② 월정수당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u> 1. 2019년도 월정수당: 월 1,798,910원 2.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p> <p>제7조(여비지급 기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지급한다.</p>

거창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1
----------	--------

제출일	2019. 1. 21.
제출자	이흥희 의장 등 11명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에 맞춰 월정수당과 여비 지급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6조제2항)

1) 2019년도 : 1,798,910원

2)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

나. 여비지급 기준 변경(안 제7조)

1)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금액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33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시행 시 소요예산 확보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0.~1. 1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89호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거창군의회
(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거창
군 의회나 그 위원회”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을 “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u>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u>,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u>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u>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u>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u>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u>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범위) <u>거창군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u>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군수 2. <u>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u>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4. <u>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u> 5.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거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2
----------	--------

제출일자	2019. 1. 21.
제 출 자	이홍희 의장 등 11명

1. 제안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기관 중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안 제2조 제2호)

1) 군수의 보조기관 중 과장급 이상인 사람

나.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변경함(안 제2조제4호)

1)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0.~1. 1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의회에서 의결된 거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거 창 군 수 구 인 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조례 제2490호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를 “거창군의회”로 한다.

제2조 중 “의회”를 “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u>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u>의회</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3.(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u>총무위원회</u> 가. <u>기획감사실, 민원봉사실, 행정과, 기업지원과, 복지정책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평생교육센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산업건설위원회</u> 가. <u>안전총괄과, 경제교통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u>거창군의회</u>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상임위원회 설치) <u>거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3.(현행과 같음)</p> <p>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현행과 같음) 2. <u>총무위원회: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 3. <u>산업건설위원회: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u></p>

거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안 번호	2019-3
----------	--------

제출일자	2019. 1. 21.
제 출 자	이홍희 의장 등 11명

1. 제안이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상임위원회별 소관사무를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총무위원회 소관사무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2호)

- 1) 기획예산담당관, 행정복지국,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무 변경함(안 제3조제2항제3호)

- 1) 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6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협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10.~1. 15.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거창군수 구인모

2019년 1월 30일

거창군 규칙 제1254호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한다.

제2조 제목 “(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을 “(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리더쉽”을 “지도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설투자 및”을 “시설투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노사화합 및”을 “노사화합,”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수출증가 및”을 “수출증가,”로 “타”를 “다른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노사화합 및”을 “노사화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최고경영인상 및”을 “최고경영인상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자를”을 “사람을”로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제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최고경영인상 및”을 “최고경영인상과”로 “지역신문 및”을 “지역신문과”로 한다.

제4조 제목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 본문) 중 “제23조제2항제2호”를 “제23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

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 다만,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
2.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7조(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전입정착금(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전입정착금 지원금액은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이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5호·제6호서식, 별지 제8호·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p> <p>① 「<u>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로</u>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탁월한 <u>리더쉽</u>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u>자</u> 2. <u>시설투자</u>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u>자</u>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u>자</u> 4. 근로자 사기양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u>노사화합</u>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u>자</u> 5. <u>수출증가</u>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u>타의 모범</u>이 되는 <u>자</u>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u>자</u> <p>② <u>조례</u>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자로</u> 하며,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u>자</u> 2. <u>노사화합</u>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u>자</u> 	<p><u>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u>」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p> <p>① 「<u>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u> 하며, 시상인원은 연 1명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탁월한 <u>지도력</u>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u>사람</u> 2. <u>시설투자</u>,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u>사람</u>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기업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u>사람</u> 4. 근로자 사기양양과 복지시책 추진으로 <u>노사화합</u>,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u>사람</u> 5. <u>수출증가</u>,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u>다른 사람의 모범</u>이 되는 <u>사람</u>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u>사람</u> <p>② <u>조례</u> 제7조에 따른 최고근로인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람으로</u> 하며, 시상인원은 연 2명 이하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 등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u>사람</u> 2. <u>노사화합</u>,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u>사람</u>

현 행	개 정 안
<p>③ <u>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u>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생략)</p> <p>④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u>자</u>를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2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⑤ 군수는 <u>최고경영인상 및 최고근로인상</u>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u>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u>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p> <p>제4조(장학생 선발인원 및 장학금) 조례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의 선발인원과 학생 1명당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 인원은 고등학생 10명 이내, 대학생 5명 이내 2.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대학생은 2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5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①~② (생략) ③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 신고 후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u>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u>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p> <p>④ 관내 각급 기관·단체의 장 또는 경제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u>사람</u>을 최고경영인상 시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p> <p>⑤ 군수는 <u>최고경영인상과 최고근로인상</u>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u>지역신문과 군 홈페이지</u>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관내 기업에 안내하여야 한다.</p> <p>제4조(장학생 선발인원과 장학금 등) ①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의 선발인원과 학생 1명당 장학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생 인원은 고등학생 10명 이내, 대학생 5명 이내 2.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대학생은 200만원</p> <p>② <u>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장학생신청서를 노동조합이 구성된 기업은 노동조합 대표에게, 노동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기업은 사용자 대표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신청서를 접수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대표는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 장학생추천서에 장학생신청서와 근로자 재직증명서를 붙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u></p> <p>제5조(사원주택 건립부지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조금의 신청은 사원주택 건축착공 신고 후 <u>별지 제7호서식</u>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④ (생 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산업단지 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p> <p>②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차료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숙사 월 임차료의 80퍼센트 이내. 다만, 근로자 1인당 30만원 한도 2.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p>제7조(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① 조례 제24조의2에 따른 근로자 전입정착금 (이하 “전입정착금”이라 한다)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무하는 기업에서 별지 제8호서식의 추천서를 받은 내국인 2. 그 밖에 군수가 전입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p>② 전입정착금 지원금액은 전입세대원 1인당 50만원이며, 3년간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전입정착금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별지 제1호서식]

거창군 최고경영인상 신청(추천)서

기업명				상시 근로자수	대표자	(남/여)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신청(추천)자	직책		성명	(남/여)	전화번호	
신청(추천) 사유						
<p>「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최고경영인상 대상으로 신청(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추천)인 소 속</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인)</p>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공적조서 1부 2. 회사소개서 1부 3. 공적 증거자료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거창군 최고근로인상 추천서

소 속	업 체 명			대 표 자	(남/여)	상시 근로자수		
	소 재 지						주생산품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 적 사 항	성 명 (직 책)	()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입사일자		근무부서		주된 기술분야			
	자택전화				휴대전화			
<p>「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7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거창군 최고근로인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추천인 회 사 명 대 표 자 (인)</p> <p>거 창 군 수 귀 하</p>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조서 1부 2. 공적 증거자료 각 1부 								

[별지 제5호서식] 신설

장학생 신청서

장학생 성명	(한문:)			
생년월일	(남/여)			
주 소	경남 거창군			
전화번호	집:	휴대전화:		
재학 학교	소재지	(우)		
	학교	학년	과	반
장 학 금 지급계좌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근로자 인적 취업사항

성 명	연령	장학생과 관 계	근속연한	회사명	근로자수	업종명
(남/여)			년 월		명	

재 산 사 항 (담당공무원이 기재함)

계	토 지		건 물		
	면적	금액	면적	금액	
천원	제곱미터	천원	제곱미터	천원	

재산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위와 같이 거창군 근로자자녀장학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근로자):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1부

거창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 추천서

기 업 명		대 표 자	(남/여)	업 종	
소 재 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추천대상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 대 폰
	소 속		직 책		입 사 연월일

위 사람을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창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9호서식] 신설

거창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주택)		(휴대전화)			
입금계좌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전입가족 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	전입일자	
참고사항	주거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그 밖에	
	소유권	매매	전세	월세	그 밖에		
자동차 소유	차 명	연식	배기량	그 밖에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거창군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구비서류: 소속 기업의 추천서 1부.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의안 번호	2018-64
----------	---------

제출일자	2018. 12. 18.
제 출 자	기업지원과장

1. 제안 이유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전입정착금 등 개정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규정 신설(안 제6조)
- 나. 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규정 신설(안 제7조)
-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순화함
자⇒사람, 타⇒다른, m²⇒제곱미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3조
「거창군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제23조, 제24조
- 나. 예산조치 : 2019년도 예산 200백만원 확보
- 다. 합 의 : 기획감사실과 법리, 예산 합의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8. 11. 16.~12. 6.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 : 해당사항 없음

고 시 문

거창군 고시 제 2019 - 9호

대지조성사업계획 (변경)승인

정윤재(에버그린전원마을 대표)가 시행하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25일

거창군수

1. 사업명 : 에버그린전원마을 대지조성사업[수월리 산33-1일원]

2. 사업주체

가. 상호 : 에버그린전원마을

나. 대표자 : 정윤재

다. 영업소재지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45-37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규모

가. 위치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산33-1 3필지

나. 사업면적 : 13,577㎡

다. 규모 : 주택용지 14필지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13,577	100	
주거용지	9,453	69.63	
단지내도로	3,061	22.55	
공공시설용지 (공용상수도, 녹지공간, 저류지)	1,063	7.82	

4. 사업시행기간(변경사항)

- 당초 : 2016년 1월 30일 ~ 2018년 12월 31일

- 변경 : 2016년 1월 30일 ~ 2020년 12월 31일

거창군수

※ 관계서류(도서는) 거창군 도시건축과 건축행정담당(☎940-3602)에 비치합니다.

거창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 결정(조성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거창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교)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하고, 같은 법 제88조6항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조성계획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31일 거창군수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40-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학교:한국승강기대학)
- 명 칭 : 한국승강기대학교 실습동 신축공사

다. 사업시행 규모 및 내용

- 부지면적 : 56,525㎡
- 금회시행면적 : 2,815㎡
- 사업내용 : 실습동 신축(건축면적 513.42㎡, 연면적 1,992.28㎡)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대표 최학영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운정1길 120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 10. 30.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연번	주소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 고
		본번	부번					
계					2,815	2,815		
1	거창읍 송정리	540	1	답	2,255	2,255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2	거창읍 양평리	538		전	364	364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3	거창읍 양평리	541		전	60	60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4	거창읍 양평리	540	2	구	136	136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사.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거창군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가. 학교시설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8	한국승강기 대학	대학	거창읍 송정리 700번지 일원	56,525	-	56,525	경고465호 (92.12.24)	

나.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건물명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규 모	비 고
교 기 시 육 본 설	1	본관동	2,828.0	5.0	819.69	2,391.01	지상3층	
	2	제1공학관	2,083.0	3.2	1,471.24	2,673.98	지상2층	
	3	제2공학관	1,826.0	3.8	1,565.73	3,945.97	지상3층	
	4	창조관	683.0	1.2	570.44	2,383.98	지하1층 지상4층	
	5	실습동	3,068.0	5.4	506.01 513.42	2,609.35 1,992.28	지상4층	변경
	6	도서관	2,802.0	5.0	1,395.63	4,698.36	지상4층	
	7	연구동	701.0	1.2	370.90	717.60	지상2층	
	8	에스컬레이터 실습동	545.0	1.0	371.28	371.28		
	소 계			14,536.0	25.7	7,070.92 7,078.33	19,791.53 19,174.46	
지 시 원 설	9	복지후생관	1,381.0	2.4	725.53	1,724.03	지하1층 지상2층	
	10	기숙사	4,904.0	8.7	2,176.26	10,088.76		
	10-1	제1기숙사			1,382.5	4,060.50	지상3층	
	10-2	제2기숙사			793.76	6,028.26	지하1층 지상6층	
	11	민원실	93.0	0.2	33.93	33.93	지상1층	
	소 계			6,378.0	11.3	2,935.72	11,846.72	
기 시 타 설	12	운동장	7,864.0	13.9				
	13	농구장	931.0	1.6				
	14	테니스장	1,421.0	2.5				
	15	광 장	1,415.0	2.5				
	16	도로 및 주차장	14,129.0	25.0				
	소 계			25,760.0	45.6			
녹 지	17	녹 지	9,851.0	17.4				
합 계			56,525.0	100.0	10,006.64 10,014.05	31,638.25 31,021.18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30.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용암로 1004-30 등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055-940-3311~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별도붙임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 1부. 끝.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중로1-11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29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면적 (㎡)	시점	종점		
군계획 시설	한들교 접속도로 (중로1-11호선) 개설공사	거창	대평	중로	1	11	280	20	6,565	대평리 441-6	대평리 440-11	건고194호('76.12.07)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한들교 접속도로(중로1-11호선)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1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2,653.1	6,565					
1	거창읍 대평리	441-6	제	5,808	970		국토교통부			
2	거창읍 대평리	441-119	전	20	20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6-3	대평마을회			
3	거창읍 대평리	441-10	임	53	53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936-3	중동마을회			
4	거창읍 대평리	1512	도	4,727.1	12		거창군			
5	거창읍 대평리	441-155	대	228	228		거창군			
6	거창읍 대평리	441-149	전	548	548		거창군			
7	거창읍 대평리	441-24	대	130	130		거창군			
8	거창읍 대평리	441-28	대	130	130					
9	거창읍 대평리	441-29	대	130	130		거창군			
10	거창읍 대평리	441-36	전	130	130		거창군			
11	거창읍 대평리	441-37	대	130	130		거창군			
12	거창읍 대평리	441-45	대	130	130		거창군			
13	거창읍 대평리	1452-73	구	287	287		거창군			

14	거창읍 대평리	440-67	전	185	185		거창군			
15	거창읍 대평리	440-42	대	130	130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746	최*식			
16	거창읍 대평리	440-30	대	130	130		거창군			
17	거창읍 대평리	440-31	대	152	152		거창군			
18	거창읍 대평리	440-40	대	146	146		거창군			
19	거창읍 대평리	440-12	잡	161	110		거창군			
20	거창읍 대평리	440-70	전	658	658	거창군 거창읍 상동 137-2	거창축산업 협동조합			
21	거창읍 대평리	441-3	임	139	139		거창군			
22	거창읍 대평리	441-151	전	100	100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128	김*중 외8인			
23	거창읍 대평리	441-152	전	52	52		거창군			
24	거창읍 대평리	440-11	제	7,586	1,102		거창군			
25	거창읍 대평리	440-68	전	628	628		거창군			
26	거창읍 대평리	441-120	전	135	135		대평마을회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5.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055-940-3592, 3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24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융자금 지원시기 및 지원계획 구체화(안 제5조)
- 나. 융자금 상환기일 전 회수에 관한 내용 명시(안 제7조)
- 다. 융자금 취급금융기관 및 융자사업 대상자에 대한 점검 기준 명시(안 제8조)
- 라. 변경사항 발생 시 보고의 의무 명시(안 제9조)

4. 전부개정 규칙안 : 붙임 2

5. 입법예고기간 : 2019. 1. 24. ~ 2019. 2. 13.

6.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19. 2. 13.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22

○ 전화 : 055)940-8126, FAX: 055)940-811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용자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용자지원(이하 “용자”라 한다)재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취급 금융기관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용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용자신청 절차)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시설자금과 농업생산성 향상과 경영유지를 위한자금(이하“생산자금”이라한다)을 용자지원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의 용자신청서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용자신청이 있을 경우 사실 여부와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용자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융자지원 대상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한정한다.

1. 해당 읍·면에서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은 농업인
2.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농업인
3. 해당 읍·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2. 제4조제1항의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적은 경우
3. 그 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거창군 농업발전자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대상자

제5조(융자금 지원시기 및 지원계획) ① 융자금은 매년 상반기에 지원하고, 당해년의 계획된 융자규모보다 신청한 금액이 적을 경우 하반기에도 시행 할 수 있다. 다만, 농업재해 피해복구를 위한 융자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지원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 범위에서 해당 연도의 융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장과 취급금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융자신청기간 및 융자절차
4. 융자대상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융자기관
6. 대출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용자조건) ① 군수는 제7조3항에 따라 협약시 용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되, 금리변동과 예산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용자금 상환기일전 회수) ① 군수는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1. 용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 할 때
2.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
4. 용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때
5. 그 밖에 취급금융기관의 요청 등 용자금 회수가 불가능 할 경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자를 받은 농업인등과 취급금융기관에 상환통지를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① 취급 금융기관은 협약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용자금의 대출실적
2. 용자금의 상환실적
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협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과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 불이행 대상자에게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경고 또는 용자금 환수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1. 계획 추진 상황 및 정상운영 여부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계획 변경의 필요성 여부
4. 그 밖에 용자금 지원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변경사항 통보) 용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한다.

[별지 제1호서식]

용자 신청서(농업인 개인용)

- 성 명: (생년월 :)
- 주 소: 거창군
- 연 락 처: ☎ 휴대폰
- 주 작 목:
- 영농경력:
- 영농규모:
- 연간소득규모:
- 용자신청금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 현재 용자 대출금액: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농업인 개인용)

1. 개요

성명		주소				
연락처		농지규모	전 (제곱미터)	답 (제곱미터)	과수원 (제곱미터)	시설하우스 (제곱미터)
농업경력		가축규모	축종:		두수:	
주요 생산실적			생산 능력			
종별	단위	수량	제품별	단위	수량	

2. 사업계획

1) 사업명:

2) 사업장위치:

3) 사업기간:

4) 사업비

(단위: 백만원)

계	기금 융자금	자부담	비고
(100퍼센트)	(퍼센트)	(퍼센트)	

5) 세부사업계획

(단위: 원)

세부사업내용	규격	단위	수량	금액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용자신청서(법인·생산자단체용)

- 법인·생산자단체명:
-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 대표자: (생년월일:)
- 소재지:
- 연락처:
- 설립일:
- 자본금:
- 주요생산품목:
- 연간소득액:
- 종업원·참여수:
- 용자신청액: 백만원 (생산자금, 시설자금)

위와 같이 용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첨부: 사업계획서 1부

거창군수 귀하

<첨부서식>

사업계획서

(법인·생산자단체용)

1. 사업체 개황

1) 개요

(단위: 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업종		주요제품		설립일				
납입자본		매출액		구분	법인, 생산자단체			
종업원수	상시:	임시:		거래은행	주: 부:			
특기사항								
사업장		주요생산시설			생산능력			
소재지	규모	생산제품	종별	단위	수량	제품별	단위	수량

2) 경영자 현황(실질경영자:)

직위	성명	연령	동업계입사	실질경영자와의 관계	학력	주요경력

3) 주주현황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4) 연혁

일자	내용

2. 운영상황

(단위: 원)

구 분		전기(년)		당기(년)		추정(년)		
	품명	단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원	재	료						
조								
달								
	계							
생								
산								
현								
황	계							
판								
매								
현								
황	계							

주) 원재료조달액 = 제조원가 명세상의 당기원재료 매입액

생 산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제품 제조원가

판 매 실 적 =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3. 재무상태

1) 요약대차대조표

(단위: 원)

구 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구 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유동자산				유동부채			
당좌자산				(외상매입)			
(외상매출)				(지급어음)			
(받을어음)							
재고자산				고정부채			
기타유동				이연부채			
				부채총계			
투자기타자산				자본금			
고정자산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당기순익)			
이연자산				자본총계			
자산총계				부채자본총계			

2) 요약손익계산서

구 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영업이익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금융비용)			
경상이익			
특별손익			
세전손이익			
당기순이익			

3) 요약제조원가명세서

구분	전기말 (년)	당기말 (년)	추정 (년)
당기제조비용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감가상각비)			
기초재공품			
재고			
기말재공품			
재고			
타계정대체			
당기제품제조			
원가			

4. 사업계획

가. 생산자금

1) 매출 및 손익전망

(단위: 백만원)

구분	당해연도	년	년	3년평균	과거 3년평균
추정매출액					
매출증가율					
손 이 익					

2)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원재료비	인건비	기타	계	자기자금	증자	차입금	기타	계

나. 시설자금

(단위: 백만원)

신증설	사업명						신증설, 매입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시설규모						소요자금	
	공사 착공일						소요액	금액
	건설 기간						자금구분	
	완공 예정일						금액	
	가동 예정일						자기자금	
	공사 진척도						증차	
	연간생산 능력증가	기존제품:					차입금	
	신제품:							
						계	계	
매입	매입 시설명	매입처	규모	매입 금액	대금 미납액	연간생산증대효과		비고

[별지 제3호서식]

용자지원대상자 추천서						
추천 대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전 화 번 호	
	주 소					
사업 내용	용 자 신청금액			사 업 장 위 치		
	사 업 명		사 업 장		사 업 기 간	
추천 사유						
<p>위 사람은 용자지원대상자로 적합하므로 「거창군 농업발전자금 특별회계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장 (직인)</p> <p>거창군수 귀하</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위원회 구성후 미개최 등 운영이 불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를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정비(폐지)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붙임 참조
4. 소요예산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도시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670-807)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도시건축과)

○ 전화 : 055-940-3594, 팩스 : 055-940-3579, 이메일: cchojh@korea.kr

붙임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
----------	-------

제출일자	2019. 1. .
제 출 자	도시건축과장

1. 제안 이유

2013년 최초 위원회 구성 후 미개최 등 운영이 불필요하며 법적 근거가 없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정비(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조항 삭제

【제5장(안 제20조, 안 제22조 부터 제29조 까지)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1. 28. ~ 2019. 2. 18. (20일간)

나) 예고결과 :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협의 중(해당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조, 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장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u></p> <p><u>제20조(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21조(삭제 2015.12.10.)</p>	<p><삭 제></p> <p><삭 제></p>
<p><u>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활성화계획 및 연도별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 <u>2.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u> <u>3.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u> <u>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u> <u>5.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 등의 참여 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u> <u>6.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사항 등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u> <u>7.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u> 	<p><삭 제></p>
<p><u>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건축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u></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 3. 도시계획·도로교통 또는 자전거이용시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자전거이용과 관련 있는 민간단체 대표 5. 그 밖에 군수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여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삭 제></p>
<p><u>제24조(위원의 임기)</u>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삭 제></p>
<p><u>제25조(위원장의 직무)</u>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p> <p>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 제></p>
<p><u>제26조(회의)</u>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u>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삭 제></p>
<p><u>제2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u></p>	<p><삭 제></p>
<p><u>제2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균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u></p>	<p><삭 제></p>
<p><u>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u></p>	<p><삭 제></p>

◎거창군 공보 제2019-132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노현리(소로2-2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거창군에서 시행중인 『노현리(소로2-2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달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불명 등 보상협의를 불가능한 관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01월 30일

거창군수

1.사업개요

- 가. 사업명 : 노현리(소로2-20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나. 위치 : 거창군 웅양면 노현리 일원
- 다. 사업량 : 도시계획도로 개설 L=133.0m, B=8.0m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명칭 : 거창군수(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장)
- 나. 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보상협의 내용 및 방법

-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 기한 내
- 나.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장고 : 거창군청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055-940-3595)
- 다. 보상방법 : 현금보상
- 라. 보상절차 :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점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좌입금
- 마. 보상협의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초본 1부(전 주소 포함), 통장사본 1부
 - 지참물 : 인감도장, 신분증

4. 공시송달 대상자

- 가. 토지 및 지장물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웅양면 노현리	146-2 (146-9)	대	521	33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6-16, 2층(무거동)	김진선	근저당	중앙농업협동조합 국민건강보험공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1	웅양면 노현리	146-2	목련나무 (15년생)	1주	울산광역시 남구 정광로24번길 6-16, 2층(무거동)	김진선	지상권	중앙농 업협동 조합	
3	웅양면 노현리	146-2	고염나무 (10년생)	1주	“	“	“	“	
2	웅양면 노현리	146-2	대추나무 (15년생)	1주	“	“	“	“	

5. 처리계획

- 기간 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6. 기타

- 공시공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같음함.


공인 등록 공고

「거창군 공인조례」 제6조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28.

거창군수

1. 등록사유 : 부서 명칭 변경
2. 등록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 2019. 1. 28
3. 등록공인의 명칭 및 인영

공 인 명	규 격	인 영
거창군인구교육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1.8cm × 1.8cm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 및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8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2019.1.10.)으로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승강기산업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 정의 수정(안 제2조제13호)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1. 28. ~ 2019. 2. 18.(21일간)

6.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미래전략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703
- FAX : 055)940-3679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과건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생략)</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u>자로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u>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0조에 따른 근로자 <u>과건계약서</u>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u>의하여</u>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u>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u></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의</u>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자의</u>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12. (현행과 같음)</p> <p>13.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u>당해</u>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u>사람으로서</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u>과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u>」 제20조에 따른 <u>근로자과건계약서</u>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u>따라</u> 확인 가능한 과건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p> <p>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의</u>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의</u>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p>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u>사람의</u> 최근 1년간 평균인원</p>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거창승강기벨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관련법령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생략)

4.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따라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법 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5. ~ 17.(생략)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완대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적 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24명(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19. 1. 28. ~ 2019. 2. 11.(14일간)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민원봉사실 지적재조사담당(☎055-940-332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2019. 1. 28.

거 창 군 수

별도붙임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138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3-57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56호('92.12.3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3-57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31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57	155.0	6	1,182	송정리 445-6	송정리 524-1	경고456호('92.12.3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운정마을(소로3-5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7,622	1,182					
1	거창읍 송정리	445-6	도	286	11	-	거창군			
2	거창읍 송정리	1061-33	구	297	9	-	국(농림수산부)			
3	거창읍 송정리	444	도	57	5	-	거창군			
4	거창읍 송정리	1601-35	구	908	334	-	국(농림수산부)			
5	거창읍 송정리	445-5	구	196	69	-	국(농림수산부)			
6	거창읍 송정리	528-35	답	855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7	거창읍 송정리	528-13	답	465	184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3길 33	권*원			
8	거창읍 송정리	445-3	답	1,128	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201, 403동 202호 (분당동, 셋별마을)	최*봉			

9	거창읍 송정리	528-12	답	1,172	86		거창군			
10	거창읍 송정리	521-8	대	79	45		거창군			
11	거창읍 송정리	528-10	답	506	161		거창군			
12	거창읍 송정리	528-9	답	1,024	161		거창군			
13	거창읍 송정리	521-2	답	67	67		거창군			
15	거창읍 송정리	522	답	284	16		거창군			
16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7	거창읍 송정리	528-37	답	119	12		거창군			
18	거창읍 송정리	524-1	답	60	4		거창군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거창군 공고 제2019 - 139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76호선 외2)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3호('85.03.11)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 소로2-76호선, 소로2-58호선, 소로2-60호선)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01월 31일

거창군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읍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76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76	42	8	278	대평리 566-4	대평리 595-1	경고43호('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58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58	37	8	336	대평리 565-4	대평리 566-4	경고43호('85.03.11)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2-60호선)	거창	대평	소로	2	60	84	8	771	대평리 566-4	대평리 564-5	경고43호('85.03.11)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대평리 상아맨션(소로2-76호선 외2)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열람기간: 신문개제 익일로부터 14일간

4.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06. 30.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붙임)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8,348	1,385					
1	대평리	595-1	도	3,690	43		(국)농림수산부			소로 2-76
2	대평리	565-4	대	249	235		거창군			소로 2-76
3	대평리	566-4	도	1,400	336		거창군			소로 2-58
4	대평리	565-5	답	490	49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5	대평리	564-5	도	266	266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27-8	이호조외1인			소로 2-60
6	대평리	1517	공	2,253	15		거창군			소로 2-60

※ 관계도면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6. 의견제출 및 열람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을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참조: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우편주소: 50132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이나 전화(055-940-3592, 3595), FAX(055-940-3579), Email : chanung@korea.kr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연락처:
- 기타 참고사항: “끝”.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산림분야) 근로자 모집 재공고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산림자원조사단)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거창군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7	
1	산림바이오매스 산물수집단	5명	숲가꾸기사업 및 산물수집, 덩굴제거 등
2	숲가꾸기 산림자원조사단	2명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 및 DB자료 구축 등

2. 근 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에 의함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9. 3월 ~ 12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 1일 66,800원(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 :00~18 :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사역 후 기술교육 및 안전교육 의무 이수(1~2주 합숙)
- 근무부서 :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산림(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기타 「2019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및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1.(월) ~ 2. 13.(수)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마. 구직등록증

6.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2. 20.(수),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9. 2. 25.(월)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27.(목)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이하 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가능

6.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별첨). 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 하

※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1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1년간 미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등 적극적인 구직확동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신청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 ※ 반복참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180일간 사업참여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시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재산을(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가구의 구성원(순 자산 2억원 미달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공증서류 제출)

< 가구원수별 ‘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65% 범위	2,048,000 (120%)	1,889,000	2,444,000	29,990,008	3,554,000	4,108,000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수령자

위의 제한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을 확인 및 조회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분야) 근로자 모집 재공고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조경관리단, 산림경관관리단)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거 창 군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연번	사업명	채용인원	주요업무내용
계		6	
1	조경관리단	4명 (남 1, 여 3)	가로수 및 녹지공간 관리(풀베기, 전정 등) 생활권 내 재해위험목 제거 등
2	산림경관관리단	2명 (남 2)	가로수 뒤 도로법면 및 연접산림 잡목·덩굴류 제거 등

2. 근 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

3. 근로조건

- 근로기간 : 2019. 3월 ~ 12월(예산범위 내)
- 보수수준 : 1일 66,800원(2019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
※ 출·퇴근 및 작업 장소 이동에 따른 수당 미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09 :00~18 :00)
※ 하절기, 동절기 근무시간 조정 가능
- 기타사항 : 4대 보험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지급
- 근무부서 : 산림과 공원녹지담당(근로지역 : 거창군 전역)

4. 신청자격

- 「거창군 공무원 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거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을 가진 자로서 정기소득이 없는 자
- 산림(조경)관련 기술자, 경력자 가점 부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또는 동등한 자격요건을 가진 자
- 임업기계 사용·운반 등 원활한 근로를 위한 차량소지자 가점부여
-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장년층 우선선발
- 『2019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고용노동부)』에 따른 신청자격제한에 대하여 적합한 자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02. 11.(월) ~ 02. 13.(수) / 3일간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거창군청 산림과(공원녹지담당)
 - ※ 응시원서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 「고시·공고」란 채용 공고문에 첨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근무시간 내 직접 제출(인터넷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첨부
동의서 미제출시, 자격, 소득, 재산 등의 선발기준 확인 서류는 별도 제출(미제출시 최저점 부여)
 - 나.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최종시험 합격자에 한함, 개별통보 예정)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서류심사 등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비용 절약을 위해 대상자 예비 선정 시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이상이 있을시 선발 배제
 - 다. 주민등록 등본 1부(주소이력사항 기재,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 분)

- 라.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자격(면허)증 사본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마. 구직등록증

6. 채용방법 및 일정 : 서류전형 및 면접

○ 채용방법 : 공고 후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 및 면접심사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결격사유 조회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2. 20.(수), 개별통보

나. 제2차 시험 : 면접 및 실기시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 면접일시 : 2019. 2. 25.(월) 예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2. 27.(목) 예정,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원 신체검사서 제출, 이상 없을 시 사역

※ 면접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이하 일 경우 2차 시험 생략 가능

6. 기타사항

- 본 시험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통보합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폰 등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산림과 공원녹지담당(☎055-940-34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신청서 및 동의서 1부(따로붙임). 끝.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1.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 하

조경분야[산림경관관리단]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9.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미동의()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미동의()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업 여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업 기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전문가인 경우	자격(), 경력(), 기타()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미등록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 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 ① 본 신청서는 [산림경관관리단](#) 사업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경관관리단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2.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20 년 월 일

거 창 군 수 귀 하

※ 신청자격 제한(공통사항)

- 산림에서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작업도구 사용 등에 장애 (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인
-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 * 다만, 2019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9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하반기 참여 가능)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간대학 재학생의 경우는 참여 가능
- 전년도 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를 배제 받은 자
-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 당 1인만 사업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 사업 연례적 반복 참여는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시 1년간 참여 제한 (최근3년 기준, 1년간 미참여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등 적극적인 구직확동의 노력이 확인되어야 신청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 ※ 반복참여와 관련하여 만 65세 이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 질병정도, 가족사항(돌봄대상 가족)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180일간 사업참여 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료시 예외적으로 참여가능)
- 타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참여한 자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 재산을(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보유한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된 가구의 구성원(순 자산 2억원 미달일 경우 신청자가 직접 공증서류 제출)

< 가구원수별 ‘19년 기준 중위소득의 65% >

(단위: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	2,907,000	3,760,000	4,614,000	5,467,000	6,321,000
65% 범위	2,048,000 (120%)	1,889,000	2,444,000	29,990,008	3,554,000	4,108,000

- 공적연금 수령자
- 공무원 · 군인 · 사학연금 수령자

위의 제한사항은 일모아시스템을 확인 및 조회